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중 본청 "942"를 "940"으로, 의회사무기구 "58"을 "65"로, 사업소 "380"을 "373"로, 출장소 "231"을 "232"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치산사업,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3번지에 둔다.

제3조 중 "시험장"을 "사업소"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연구소"를 "사업소"로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여, 동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8. 휴양림 조성 관리

제5조 및 제6조 중 "연구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8조중 "시험장"을 "사업소"로, "연구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산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감축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조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58명"을 "65명"으로 한다.

- ④ (다른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도유림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